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6. 9(금) 10:00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자원에 관한
조례안
(교통건설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58호
- 나. 제 출 자 : 정재동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2. 제안이유

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구청장으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추진실적과 성과를 금천구의회에 해당연도 결산 심사에서 보고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- 마.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).
- 바.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,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
사.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, 다른 자치구 및 전문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재난 및 안전관리법」 제4조 및 제5조 등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 및 제3조 등

「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 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3. 6. 1. ~ 6. 7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예측 불가능한 풍수해로 인한 금천구 주택의 침수 상황에 대비하고 필요한 방지 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- 제2조 정의에서 “침수 방지시설”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2¹⁾에서 명시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인 차수판과 역류방지 밸브를 인용하고 있으며, 또한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함.

2)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1)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2(침수 방지시설)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차수판(濾水板)
2. 역류방지 밸브

3) 지원 계획 수립 등(안 제6조).

-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해 지원 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
- 설치에 따른 추진 실적 보고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함.

4)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실태조사 규정(안 제7조).

5)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.

-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6) 홍보 등(안 제9조).

-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장, 지원에 관한 홍보 등을 규정함.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, 상위법령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
-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에만 의존해 오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일반 회계 등 타 회계에서의 지원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침수 방지시설의 보급 확대 및 주민의 재산 및 안전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 다만, 제6조제3항의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관련 업무 실적 보고 및 결산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본 조항의 적절성은 해당 상임위원들의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3. 1. 5.] [법률 제18685호, 2022. 1. 4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
2.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·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
3.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·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
4.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
5.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
6.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
7.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·관리
- 7의2.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·시설 및 인력의 지정
8.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□ 자연재해대책법

[시행 2023. 4. 11.] [법률 제19331호, 2023. 4. 11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풍수해” (風水害)란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

가.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

나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·관리

다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
2. 풍수해 예방 및 대비

가. 삭제 <2017. 10. 24.>

나. 수방기준 제정·운영

다.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·운영

라. 내풍(耐風)설계기준 제정·운영

마.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9.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국민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·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2. 4. 29.] [국토교통부령 제1123호, 2022. 4. 29., 일부개정]

제19조의2(침수 방지시설)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차수판(遮水板)
2. 역류방지 밸브